

---

제6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

일시 1956년11월23일(단기4289년)(금) 상오11시10분

---

의사일정

1. 제5회임시회제1차회의록통과
  2. 보고사항
  3. 단기4288년도서울특별시일반회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4. 시정감사보고
- 

부의된안건

1. 제5회임시회제1차회의록통과 ... 1面
  2. 보고사항 ... 2面
  3. 단기4288년도서울특별시일반회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 7面
  4. 우남회관공사집행중지권고결의에관한질의의견 ... 12面
  5. 역청공장대지에대한질의의견 ... 12面
  6. 시정감사보고 ... 26面
- 

(11시 10분 개의)

○의장 김진용; 이로부터 제6회임시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5회제1차회의록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

1. 제5회임시회제1차회의록통과

(시정과장 신용석 제5회제1차회의록 낭독)

지금 낭독한전차회의록에 이의없으십니까?

(「없소」 하는이 있음)

이의없으면 그대로 통과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록에서명하실  
분은 김항복의원 김준식의원 두분입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

## 2. 보고사항

○시정과장 신용석;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1. 인사발령통지의건

11월11일자 서울특별시인사이동에따라 의회사무를 담  
당하는 시정과장에 사무관 신용석을 보하고 의회계장에 지방  
참사 이의환을보하였다는 시장으로부터의 통지가 있어 보고  
합니다.

### 2. 국유재산취득에 관한건

11월16일자 시장으로부터 의회 부의요청이있어 금일  
각의원에게 유인배부해 드렸고 이는 재정위원회에 심의를 부  
탁하겠습니다.

### 3. 시장 증축건물 기부 채납에 관한건

11월15일자 시장으로부터 재산취득에관한 의회 부의요  
청이있어 금일 각의원에게 유인 배부해드렸고 이는 즉시 재  
정위원회에 심의토록 부탁드립니다.

### 4. 서울특별시 토지 구획 정리비 특별회계 설치조례안 심 의의건

10월30일자 시장으로부터 의회 부의요청이있어각의원  
에게 유인배부하여드렸고 이는 재정 건설 예결 3개위원회에  
심의를부탁하겠습니다.

### 5. 청원서 진정서 처리에 관한건

휴회와 폐회기간중의 12건의 청원서및 진정서가 제출  
되어 회의규칙에 의하여 관계위원회에 심의를부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진용; 그밖에 보고사항이 있습니까?

(「의장」 하는이있음)

○이원찬 의원; 전번 「동아일보」의 기사내용인데 이권운동에 바쁜 시의원운운이라는 문체에있어 본의원외 4인에게 조사를 하라는 수임을 받어서 그후에 조사한 내용에대해서 잠깐 보고를드릴려고 합니다.

이문제에 대해서 첫째 집행당국의 관계당국을비롯해서 각과장에게 내용을 추궁한 결과 하등 그러한 사유가 없었다는 답변의 말이있어서 그이상 더조사할도리가 없었습니다.

다음에 동아일보에 가서 편집국장에게 말씀했더니 역시 그러한 문제는 즉 말하자면 이권운동의 전개에대해서 대체설명을 들었을뿐입니다. 즉말하자면 출신구에서 시민이부탁하는 문제라든지 또는 인정상 인사관계 에대해서 시당국에 부탁하는 그러한 정도의것 이라고하면 문제가 없는데 그것은 좀 그보다 문제가 다르지않는가 하는 이런점 에서 기사가 취재된 모양이니 그내용에 대해서는 더깊이 물어주지 말어달라는 그러한 답변을 듣고서 그이상 더조사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본회의에서 조사위원회의 임무를 담당한만치 조사결과를 보고드립니다.

○의장 김진용; 다음 보고사항 없습니까?

(「의장」 하는이있음)

○김상흡 의원; 제가 부산출장 갔다온 이후로 본회의가 개최된 기회를 얻지못해서 오늘에야 의원동지 여러분에게 출장 갔다온 보고를 드리게되었습니다.

그때에 내무부에서 주최한 지방행정연구회 라는것을 경상남도 도청에서 개최 했는데 그것이바로 이달 초하룻날서 부

터 초사훗날 까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석 한 사람은 각각 달렸어요. 즉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원 한 사람 사무당국에서 다섯사람 또 어떤데는 시장이온데도 있고 국장이온데도 있고 여러가지 형태로 다른것을 여기에서 비로소 알었습니다. 그런데 가보았더니 내무차관 또연대교수 「조효원」 이분이 주로 첫말은사회를하고 그다음에 「조효원」 교수의 강연이라는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공무원은 물론이지만 자치단체의 의원들도 물론 새삼스러운 학설이나 무슨 우리에게 새삼스러운 도움이될만한 강연이 있나해서 경청했더니 이런저런 말이 나가다가 결론적으로 지금까지는 구미각국에서 삼권분립으로 쪽 해내려왔다. 그런데 오늘날에있어서는 삼권분립이 아니라 차차 이권분립으로되어나가는 경향이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세계에민주주의국가중에 이권분립으로 되어가는 국가가있나 하고 자세히 들었더니 무슨 소리인고 하니 행정부가있고 또 사법부가 있고 입법부 라는 것은 있기는있는데 차차 차차 무력해서 별권력을 가지지 못하는 이와같은 존재에 지나지않는다. 이런얘기를 해요. 그래서 강연을 한후에 제3일째 되는날 우리 의원들 끼리만 모여서 「조효원」 교수의 강연내용을 토론하는 가운데 대단히 말이 많았고 혹자는 아마 내무부에서 「콤미쑈」 을 단단히 얻어 먹고온모양이다. 그러니서울에서부터 부산에까지 와서 중임공무원 내지 지방의원들을 모아 놓고 이런 소리를 하는것이 아니냐 그런 비난이 있었다 는것을 보고말씀드리고 만일우리 서울시의회에서 내가 이와같은 보고를 했다고해서 「조효원」 교수가 그렇지않다는것을 변명해줄 기회가 있다고 할것 같으면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초사훗날 처음에 경상남도 의회에서 주최해서 각의회에서온 지방의원들 끼리만 모여서

의견교환을했는데 주최는 경상남도주최였고…….

도대체 우리의회운영 해나가는데 애로가없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좀더 의결기관다운 의회를 운영해갈 수가있느냐? 이것을 잠시토의한일이 있습니다. 그때에 역시 다수의원들의 발언이 첫째에 「조효원」 교수의 강연이라 는 것은 우리는 도저히 보통상식 으로는 이해하지못하겠다는 결론이 내려졌고 둘째는 우리가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거기 사는 주민들이 직접선거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거개가 동일한 의견이였고 또 그다음에는 요새 신문에 부산시의회 에서도 많이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일제시대라도 읍면제와 도제가 각각있었는데 우리대한민국이 된이후로는 지방자치법이라는 이것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10만이되던20만이되던 다같이 자치법 하나만을 쓰고있다 는것이에요.

또 시일에있어서도 60일과 90일을 가지고 의회를 운영하는 데 자주적으로 일정을 정해줄것같으면 도저히 의회운영을 못하겠다. 이런결론이 내렸다는것을 여러분 앞에말씀 드립니다. 또 세제는 일비문제……일비문제라고 할것같으면 국회의원들은 지금 무엇무엇해서 한 4 5만원씩 받는모양이고 특히 자유당의원들은 20여만원 수입이 있는것같습니다.

나는 우리 시의회의원은 하루에 2백원 이것가지고는 실비로 지탕해 나갈수없다. 우리가 아무리 시민을 위해서 일을한다고 하더라도 이것가지고는 도저히 해나갈수 없다. 그것도 역시 동일의견 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인 한자리에서 결론적으로 어떤 원칙을 하나 세우는 것이 좋지않느냐? 하는 이런 의견이 있어서 이것은 좋다. 이번에 서울특별시의회가 될수있으면 적당한 기회를 선택해서 한국 지방의회의 의원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는 기회를 만들어달

라 시기로 말할것같으면 음력정월명절 양력정월명절을 기해서 또 국회가 개최되는 그때를 이용해서 우리가 모여서 각자의 연구한 개정안을 종합해서 의회가 원활히 운영 될수있는 개정안을 만들어 가지고 국회의 의원들을 차저가서 이것을 통과시켜달라는……그러한 결론을맺었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릴것은 도의원뿐만아니라 큰 지방의 시의원……말하자면 부산이라든지 대구 전주 이와같은 큰 시에서도 역시 우리와 같은 고충이 있다고 하면서 그분들도 한명 내지두명이 한자리에 그때같이 모여서 토의하기로 그렇게 합의를 보았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요지만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김동순 의원; 운영위원회 간사의 자격으로서한마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를 위시해서 각신문에 한 일주일 일을 기해서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있는 「뺏찌」에대해서 의원제위께서 모르시는분이 계실것같아서 가격과 품질에대해서 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체의 10분지7이 금으로되어있고 이총액이 16만3천9백원이올시다. 그런데 동아일보기사에는 6천원씩 30만원을 시비에서냈다고 허위보도가되었습니다. 마는 우리가사적으로 융통을해서 10만원을선불하고 잔액을지불하지못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동아일보에서낸것은 전연허위 보도라고 생각되기때문에 더 변명하지않겠습니다. 이런 점을 여러분께서 잘 양해해주시고 조금도 우리 자체가 부당한 비용으로서 또 우리나라에서 하지않고 일본에 발주한다는것은 일언반구 한일이 없고 한국에서는 포장이나 그외 기술이 대단히 좋지못해서 불과 3,4개월이 못간다 이러한 얘기를 하고 만약 포장으로 할려면 미국이나 일본에서 하면 될지모르겠다 한 이것뿐입니다.

간단히 보고합니다.

○의장 김진용; 그밖에 보고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러면 보고사항은 이로서 끝났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단기4288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내무국장이 설명할터인데 마침 급한 일이 있어서 의회에 출석을 못한것같습니다. 사계과장이 설명해주실 까요?

---

### 3. 단기4288년도시서울특별시일반회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사계과장 오대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앞에서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것을 상정하여 설명의말삼을하게된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특별회계에 제4회 수도비 또 제4회 동정비 특별회계 세출 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의회의 의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 부터 간단히 예산안 내용에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번째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에대해서 본래 시내주요 간선 도로의 포장공사라든지 또는 간선 하수도 시설공사는 그 경비 대부분을 국고 보조로 하여 온것입니다. 이번에 국고보조금 4억2백만원을 사용함으로써 중요 간선도로53개 노선에대한 하수방 뚝 또는 세멘트 포장공사를 일괄해서 총공사비의 약 30 퍼센트에 해당하는 경비를 시비로 부담케 되므로 인해서 세출 제4관 토목비 지출항에 1억7천4백6십3만 2천3백원이고 제2절로 자재대에 있어서는 동대문 보수공사가 긴급불가결한 관계로 이공사비소요액을 제14관 보조금에서 천오백만원을 추가했습니다. 제10관 교화비에 3백9십1만2천4백원을 추가해서 이의 공사비 소요액을

계상한것입니다.

제1관 의회비에 577만원 제21관 영선비에 524만원을 증액해서 시의회의 구성에 따르는 의사당수선 기타 각종 수선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공보비에 백만원을 증액하여 연말에 제하여 소요되는 공보관계 행정의 부족을 보조하고 제 26관 제지출금 1천7백4십1만7천5백원을 시청사 및 시의사당 신축용지매수비 7백8십1만원 또 일시차입금액인 4억5천만원에대한 11월1일 부터 12월31일까지 두달 동안의 이자 소요액을 계상한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것이 일반회계 세출면에서 추가경정예 나타난 숫자를 말씀드렸고 세입에 있어서 1억7천9백5십6만2천3백원의 증액을 본것은 새 재원으로서 도로부담용 수입으로 1억7천4백6십4만2천3백원에 동대문 보수공사비 국고보조금 4백9십2만원을 추가계상한것입니다. 세출은 수개 감액을 본것은 이것을 당초에 예산 계상할때에 비해서 지금 상당한 관이줄어진 이때에 비교적 불급하다고 하는것이고 불가피한 관항목을증액하는가운데에 경정예산을 본것입니다.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릴것같으면 일반회계에서 1억7천9백5십6만 2천3백원이라고하는 세입 총예산에서 증액을 보았다고하는것이 지금 말씀드린 도로수익자 부담금과 국고보조비로서 4백9십2만원을 보조를 받은것이 이번 총세입의 추가를 보게된것입니다.

그다음에 수도비특별회계에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비특별회계는 이것은 경정예산입니다. 세입세출 총예산에는 변함이 없고 과목내에 증감을 보게된것입니다. 그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상수도확장비 12항에서 3천만원을 감했고 제8관 예비비에서 1천2백8십만원 감하여 합계 4천2백8십만원을



삭감했으며 제7항 영선비에 증액을 해서 독섬 공업용 수원지에 사무실과 숙사신축공사비를 계상했습니다.

제4관 제10항 기계설비비에 의해서 1천6백만원을 감하여가지고 난방설비비를 계상한것입니다. 여기에는 세출면에 하등 변동이 없고 불급하다고하는 공사에대해서 경정해가지고 긴급불가피한 다시말하면 독섬 수원지 확장한데에 대한 시급한 난방 관계라든지 이러한것을 하기위해서 부득이 경정조치게 된것입니다.

다음에 동정비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정비 특별회계 역시 경정예산입니다. 여러의원께서 다 알고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동행정이 제1선봉이라는것은 말할것도 없습니다 만은 그에 반해서 경비부족을 항시 대단히 느끼고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의 기정 예산중에서 비교적 불요 불급하다는 관항목 예산에서 좀 감하여가지고 사무비를 증액해서 동행정 운영에 다소라도 도움이 되도록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것입니다. 그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세출 제1관선거비에서 1천만원 제3관 영선비에서8백만원 제7관 예비비에서539만75백원 합계 2천3백3십9만 7천5백원을 감해다가 제2관에 사무비에 1천6백4만 7천5백원 제6관 제지출금 제16목 특별관공비에 각각 증액조치를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무비의 부족으로해서 동행정 운영상 지극히 곤란을 받는것을 다소라도 완화를 하자는것과 또 특별관공비에 7백3십5만원을 증액한것은 주로 말단 통반장회의를 열어서 동행정 운영에 대한 지시 또는 협의를 항상 실시하고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의 부족을 느끼고 있기때문에 이번다소라도 증액해서 동장으로 하여금 동행정을 운영하는데 좀 뒷받침을 하자는 뜻으로 동정비특별

회계경정예산을 제출하게 된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것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대체의 내용인 것입니다. 예산안의 내용이 비교적 간단한 관계로 있습니다만은 될수있는대로 조속히 이것을 심의하셔서 통과해주실줄 간절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간단하지만 이것으로서 제안설명을 대신 합니다.

(「의장」 하는이 있음)

○박수형 의원; 현재 사계과장께서 4288년도 일반예산 세출입추가경정액 1억7천9백5십6만2천3백원에 대해서 세출입에 대한설명이 있었고 또한 수도비 특별회계 내지는 동정비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설명이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당국에서 지금 조속하는 태도라든지 또한 이 추가예산안자체가 서울특별시 전체의 예산면에서 볼적에 그 액수가 그리 많지않는 액수이기때문에 오늘 여기서 되도록이면은 이것을 심사해서 결정해달라는것이 집행부의 요구인것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액수가 많은 적든 또한 추가예산도 역시 예산의 한부분이기때문에 우리 서울특별시 의회회의규칙제33조에 「예산안이 제출되었을때에는 시장의 시정방침에대한 설명을 들은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경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의회에 보고케 한다……」 이런것이 명문이 되어 있는것입니다.

그럼으로서 아까 사계과장이 여기에대해서 설명한 그것만 가지고는 역시 조목조목에 있어서 석연치못한 문제가 많이 있다고 느끼기때문에 이것은 오늘여기서 일단 예비심사를 하기위해서는 예산결산위원회에 이것을 회부해달라는것을 저는 여기서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된 연후에는 예산결산위원회로 하여금 이 조목조목에 있어서 문

교라든지 혹은건설이라든지 혹은 내무라든지 각해당 분과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최종심사를 한 후에의회의 부의해줄것을 여기서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재청이요」 하는이 있음)

○의장 김진용; 박수형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재청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는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러면 박수형 의원의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시정감사보고가 있을터인데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회의규칙 제11조 3항에의해서 전중남의원외 5인이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여기에 그대로 의안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안」

우기의 건에 대하여 회의규칙 제11조3항에의거하여 좌기의 사항을 질의하고자 자이 동의안을 제출함

기

1. 제5회임시회의 제1차회의에서 채택된 우남회관공사집행중지 권고결의에 관한 질의의견

2. 역청공장 대지에대한 질의의 건

이상 두가지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의 변경에 대해서 이것을 그대로 채택합니까?

이의가있으면 말씀하세요.

(「이의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러면 그대로 이 의사일정을변경해서 전중남의원외 다섯 분이 제출한 이 의사를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해주십시오. 전주남의원…….

---

4. 우남회관공사집행중지권고결의에관한질의의견

5. 역청공장대지에대한질의의견

○전주남 의원;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한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거10월29일 제5회1차 임시회의에서 우남회관집행중지 권고안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엄연히 공사를 집행하고있기때문에 여기에 대한것을 오늘회의에당연히 집행부 당국자가 거기에대한 보고를 해야 마땅히 옳으리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일언반구 보고한마디 없었고 그래서 저의들로서 이것을 거기에대한 보고를 자세히 듣기위해서 재차 여기에대한 질의를 하고자 하는바이올시다. 저번에도 여기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우남회관 건축을 하는데 있어서 우남이라는 글자 두자를 반대하는것이 아니에요. 현 서울시 실정을 보면은 여러분이 지상을 통한다든지 혹은 라디오를 통해서 아실줄 압니다만은 급한 일이 허다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차입을 해달라고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불과 며칠이 되지않아서 1억6천만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들여서 이 공사를 해야 옳으나 옳지않느냐 하는것을 제가 제안했든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년 홍수로 말미암아 서울시내 각지 각처의 하수구가 맥혀서 심지어는 대서울에서 침수 또는 피해를 받은 시민이 허다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가장 급하냐 또 이런 수해대책을 빨리 추진하는것이 급하냐 하는 문제를 논의했든것입니다. 여기에 아무런 이렇다 하는 오늘 보고가 있을줄 알았드니 없어요.

지금 과거는 어떻고 서울의 허다한 일……할일이 얼마든지 많습시다 만은 이것을……이공사를 반듯이 추진해야 옳으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시방심지어 판자집을 헐어부치고 또는 거리에 쫓겨나서 굶주리고 헐벗은 이 서울시의 시민이 허다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데에 대한 대책이라는것을 일언반구 말한마디 없이 이공사만이 추진이 되어야옳은 일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것을 저는 알고싶어서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하는것입니다. 또한가지는 거10월20일인가 지상에 잘 기재되어서 여러분이 잘 아실줄로 압니다만은 기자회견석에서 시장이 말 씀하기를 서울시 의원들이 이 우남이라는 두 글씨를 가지고 반대 한다는 이런 무엇이 나왔었습니다. 소위 160만 시민을 대표하는 서울시장으로서 이런 정치적인 문제를 갖다가 여기에 개입시켜가지고 서울시 의회의원 47명에 이런 모욕을 했다고 저는 보기때문에 여기에 대한것을 질의하고싶습니다. 우리가 정치적인 문제를 말하는것이 아니고 현 서울시 시민의 실정을 좀더알아달라는것을 요청했든것입니다. 우남이라는 글씨를 넣든 아무런 글자를 넣든 그것을 반대하는것이 아니에요. 서울시민이 엄동은 닥쳐오고 구호를 해주어야만 살수있는 이런 처참한 위치에 놓여 있기때문에 저는 반대하는것이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관리로서 정치적인 문제를 운운 한다는것은 우리가볼때에 대단히 허수룩한 답변을 했다고봅니다.

관공리가 정치를 운운한다는것은 대단히 재미가 없어요. 우리가 우남이라는 두글씨를가지고 반대하는것이 아니고 차기에……내년도에 예산에 넣어가지고 하는것이 낫지않느냐 하는것을 여기서 건의했든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사집행을 좀 중지해주시요 했든것이 중지커녕 지금 산때미 같이 쌓고 있어요. 이것을 볼때에 서울시민이 대단히 섭섭히 생각합니다. 우선 엇그저께도 신문지상으로 보셨읍니다만은 약수동에 솟

자는 확실히 모릅니다만은 수백호의 판자집을 헐고 내쫓아서 거리에 남녀노소가 울며 방황하고 있다는것을 볼때에 우남회관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것이나 또는 수십수백의 시민이 헐벗고 굶주리고 거리에서 방황하고있는것을 볼때에 어떤것이 중요하냐 하는것을 우리는 선각했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는 서울시당국에서 여기에대한 보고가 있을줄 알았습니다 만은 없었습니다. 엄연히 이 법규에도 있습니다 만은 3일이내에 이것을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의회규칙 43조에 명문화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의회에서 이러한것을 결의하고 권고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일언반구 답변이없다는것을 보아가지고 서울시 집행부당국자들이 무엇을 하는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의심하지않을수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대한것을 질의를 하고자 하는바이올시다. 그다음에 또한가지는 근30년 가까운 장구한 시일을 두고 위정시대 부터 있었던 창신동 채석장 문제 이것이 근자에 신문지상으로 보든가 여러가지 정보를 우리가 종합해볼때에 어느조그마한 세종학원이라는데에서 1만5천여평을 대부분 받아가지고 학교를 짓겠다고 그런 막대한 시설을 철거 또는 내달라는 이러한 등등의 문제를 가지고 심지어 학생을 동원시켜 시위를 하도록 만들어 놓았다는것이 서울시 당국으로서 책임질수있느냐 하는것을 저는 알기위해서 질문하는것입니다. 적어도 30년 가까운 동안에 서울시의 도로포장공사 기타 하수도 같은데에 막대한 도움을 주고있습니다.

현재 수천 수만톤의 매장량을 가진 이 채석장을 여지껏 서울시로서 파쓰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지껏 아무런 사무당국과의 연락조차 없이 적어도 30년가까운동안에 서울시의 도로포장공사 기타 하수도 하천공사에 우리가 막대한채석이 필요했

는데도 불구하고 수천 수만톤의 매장량을 가진 이채석을 여짓  
것 서울시로서 파다쓰는것이올시다. 이거 여짓것 아무런 사무  
당국과의 연락조차 없이 서울시에서 뺏기게 되었다는것이 서  
울시로서는 손해가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어  
떤방법으로든지 도로찾지않으면안되겠습니다. 미군이 해방후  
에 큰시설을갖다가 소위 역청을 만들어내는 이런수십억에달  
하는 원조시설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에서는 그것  
을 뺏긴다면 서울시 포장공사라는 것은 도저히10년가도 완전  
히할수가없습니다. 이런것을 어째서 해방이후……아무런 상부  
당국과의 상의도없이 또한 전쟁으로말미암아 부패한 서울시  
도로포장공사에있어서 없어서는안될문제를 어째서 집행당국  
자 여러분은 어째 이것을 방관하고있었는가 이것을 알수없고  
이점을몇가지질의하고저하니 여기에대한 책임있는답변을  
행정당국에서 해주시기를 부탁하는바이올시다 이상으로서내  
용을설명해드리고 그만 내려가겠습니다.

○의장 김진용; 지금질의 제1항 우남회관공사집행중지 권고  
결의안에대한답변은 부시장이 하시겠습니다.

○부시장 신용우; 부시장이 답변해올리겠습니다. 역청공장관  
계부터 답변올리겠는데 역청공장관계는 지금 현재 정세는  
「저의서울시가 계속해서 그땅을임대차계약을 받아가지고 역  
청공장을 그대로 해야겠습니다」 하는것을 내무부장관의구신  
을얻어가지고 재무부에요청을하고있습니다. 거기에대한 회답  
이 금명간 서울특별시가 내려쓸수있도록 회답이올것이아닌가  
하고 기대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금명간 재무부에서 내려쓰도  
록 사용허가가 나올것을 저의들은 지금 희망을하고 추진하고  
있는것입니다. 현재 임대권을가지고있는 세종학원이 서울지방  
법원에 임대권을 주장하고 「역청공장을 철거를해달라 현재

서울시가 불법사용을하고있으니 가처분을해달라」는 청원이 지방법원에 계소중에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문제로 우리 서울특별시가 계속사용할수있다면 근본문제가 소송대상이 없어지기때문에 소송사항은 없어지리라고 생각을하고있습니다. 우리 서울특별시가 눌러서 쓸수있도록 되리라는 희망을가지고 회답을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됐냐」 하는것을 아마 책망을주신다면 그책망은 저의들이 어떻게 대답을드릴도리가 없게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역청공장을 근 20년이상을 서울특별시가 사용을해왔고 현재 공익상의 견지로봐서 가장 중대한역청공장을 집행당국자의 부주의로 인해서 이런사태를 가져오지않았느냐 하는책망을 변명할수없습니다.

저의 서울특별시로서는 거기서 그대로 눌러서 사용하도록 농림부와 재무부에 노력하고있는것만은사실입니다. 장래에 그보다나은 역청공장을 다른데다 시설을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생산품이나와가지고 도로포장에지장이없을때가온다면 현재 창신동것은 옮겨도 좋습니다만은 아직 그공장을 대용할만한 공장도없는이상 현재 창신동에있는 그공장을 눌러써야겠다는것을 저의들은 작정을하고 요청을하고있는것입니다. 지나간잘못은 굳이 변명을 올리시않겠고 앞으로 금명간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어찌면 서광이 있을것같은 그런희망을가지고있습니다. 이정도로 역청공장에대한 답변말씀으로하겠습니다. 우남회관에 대해서는 중지해달라고하신 그말씀의취지는 저의들 집행부에서도 잘 이해파악을하고있습니다. 「이러저러한 취지가 있으니 중지를해라」 하고 권고하신 취지를 저의들이 잘 파악을하고있습니다. 거기에대해서 어찌 그권고안을 처리했다는회답이없느냐 또 신문기자회견석상에서 시장이 그런얘기를 했느냐? 주로 두가지말씀을 알려주셨는데 신문기자회견석상



에서 저도참석을 했었습니다. 저도참석을했었는데 의회에서 권고한취지가 그회관의 「우남」이라는이름이 못마땅해서 한 것같다는 말씀은 안했습니다. 그런얘기가 기자회견석상에서나 오니까 여러이야기가운데 혹은 이름이 마땅치않은 의견을가진분들도있어서 그런얘기가있다는 얘기를들었다는정도의말씀이지 의회의전체가 그런이름의 찬성을안하기때문에 이것이 권고중지안으로 나왔다고 기자회견석상에서 얘기한적은없습니다. 이것을 더군다나 정치적으로 얘기한것도 없었다는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그런 정치적인의도로 기자회견석상에서 말씀한것은 아니었다는것을 제가 시장을 대신해서 답변해올리겠고 회답이 어찌없느냐 하는것은 그런취지를 저의가 십분 잘알고있지만 내친걸음이되뇌서 권고결의안이 나오기전에도 이공사가 착공이됐고 또 내친걸음이됐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결의안을 존중을할려면 중지를해야되겠습니다만은 일방으로는 내친걸음이되서 그결의안에대한 확고한뜻대로하겠습니다 하는 회보를 돌려야겠습니다만은 아직 그런회보를 미처 못하고있는중입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곤란한그이외에도 시행정전 체면을볼때 급한일이많이있으니 그런 급한일도하고 이 공회관도 짓고 하면 좋은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현재 저의들로서는 노력하고있습니다. 하나는 내친걸음이고 하나는 일반적인 급한 공사가 되니 그런것도 추진할수 있는 재정적인 힘이 슌다면 이런것도 결코 우남회관 자체가 나쁘다는 그 말씀이 아니라는것을 분명히 저의들이 듣고있기 때문에 그것도 짓고 한쪽에 급한일도 해나가면 동시에 해결이 되는 그와같은 회답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길을 저의들은 생각하고있습니다.

결의안을 받은 이상 정식으로 보고를해라 당연한 말씀이

올시다. 저이도 해야될것같습니다. 날자가 조금 늦인 감이있 습니다만은 일간 정식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 상으로 끝이겠습니다.

(「의장」 하느이 있음)

○김인기 의원; 지방 우남회관 문제에 대해서 부시장께서 답 변의 말씀을 하신데 대해서 제가 듣기에는 대단히 책임있는 답변이좀 확실하지못하며 또한 우리가 오늘날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47명이 이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방 서울시 행정면을 들추어 볼때에 독재정 치를 지금하고 있으면서 바깥으로는 민주정치다 지방자치법 에 의해서 민주정치를 실시한다 하지만 오늘날 후면에 있어 서는 독재정치를 쓰고있습니다. 그이유는 무엇이나 우리가 지 난번에 서울시에 실정에 비추어서 우남회관을 권고 결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갖다가 일방적으로 실시를 한다는 것은 독재주의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또하나는 서울시 전체 시민에게 국제적으로 체면을 유지하기위해서 서울시민이 집 합할 장소가 없으니까 건물을짓는다 이렇게 시장연설에 나왔 습니다. 그러면 국제적인 도시의 체면을 유지하기위해서 우남 회관을 짓는다면 지방 우리 서울시 전시민의 체면에 따르 는…… 이 수도의 역군이 될 아이들이 지방 천막속에서 공부 를 하고있고 노정에서 공부를하고있습니다. 이와같이 체면 유 지라는것은 그나라의 문화수준에 따르는것이에요. 수도인 서울에서 천막속에서 공부를하고있는 이때에 이런 우남회관을 지어가지고 체면 유지를 할수가있습니까? 아까도 전중남의원 이 말씀한것과같이 서울시내에 지방 허다한 급한일이 있음에 도 불구하고 제가 요지음 각주변을 돌아다녀보니 아이들이 심지어는 4학년까지 4부제를 하고있는 학교가 있어요. 그러

면 그 아동들이 하로에 몇시간을 공부하느냐. 2시간밖에 공부못하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또 비오는 날에는 천막에 비가 짹짹새는 학교가 있는 이런 현실에 비추어서 어느것이 더 급하냐 이것을 한번 비교해보십시오.

이것으로서 우리 시의원들은 시민의 의도를 받들어서 우남회관을 중지하고 급한 면 부터 시정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우남이라는 두글자가 어떻게 되었어요? 시장이지금 무엇이라고 말을 했어요? 대체 우리가 우남이라는 두글자가 나쁘다고 한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적어도 수도 서울의 시장으로 앉아서 시민의 의도를 받지않고 자기 개인의 독재주의로 시장할려면 이 지방자치법이라는 것을 무엇하려고 만들어 놔으며 우리의 의도를 어찌 받들지 않는 것이예요. 이것은 본래 밖으로는 민주주의다하고 민주정치를 한다. 안으로는 군주 즉 독재정치를 한다는것이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이와같은 시정을 해서는 아니되겠습니다. 부시장께서 하신 말씀도 이것은 답변이 스지않는 말씀을 하고있어요. 국제도시의 체면을 유지할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나라에 학교가 지방 천막속에서 공부를하고있는데 어느것이더 급하냐 이것부터 검토를 하지않으면 안되겠습니다. 여기서 이러한 구주주의부터 이제 부터서는 버리고 시민이 요구하는 민주적인 시정을 해주실것을 나는 바라는 바입니다.

○이익렬 의원; 요전에도 이 우남회관에 대해서는 부시장이사후의 결의…… 또 중앙에서 결의한 결과 이 공사만은 어느정도 진행하겠다고 답변한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후는 어떻게 할것인가. 시장은 시민으로서 모신 시장이라고봅니다. 물론 중앙에서 추천했고 정부에서 추천했다고 보지만 우리 시의원 47명은 시의 실정을 좀 알어서 대변해달라는 우리 시의원이

라고 봅니다. 즉 말하자면 우리 시의원으로서나 소위 시장 시의원 시장으로서 좀 시민의 이목을 듣자고 하는것입니다. 시민은 어떻게 지금 요구하고있는것인가 우리 시 행정 전반과 시민의 양상을 어떻게 시의원이 감사를 하고있는것인가 저는 대단히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 사후에 명령이고 결의가된 과거 김태선시장이 결의했으니까 곧 이런 공사만은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확실히 들은것 같습니다. 그러나 금후에 우리 시의원 소위 시민의대변이라고 하는 소위 시민의 결의를 해서 우리가 권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사람들이 만일에 명년도라든지 차후에 그것을 의결 안해주며는 어떻게 하겠소 한다면 시민들은 유야무야하게 권고안이니 권고니해서 그 결의를 시정하는데 여의치 못했다 그런 그 언사가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 시의회로서는 이왕에 결의했든것이니까 당장 그공사를 중지해라 그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로서는 금후 어떻게 할것인가 우리 시민의 생활과 또 우리의 160만 시민의 그 의도를 받아들여보자 말씀이에요. 오늘날의 형편을 보십시오. 이동철에 김장을 십분지일 백분지일도 못한 이 시민의 형편을 볼적에 미가는 대단히 양등하고 시민의 생활환경이라는것이 대단히 못하게 된것을 우리 시장이나 시의원들이 잘알아주셔야 될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무엇이니 무엇이니 말씀을 많이 하셔서 더 말씀을 아 니드리겠는데 좌우간 우리가 시민이 요구하는것을 빨리 해야 될것입니다. 과거에 김시장이 결재했으니까 제2차 공사까지는 해야 되겠다 좋습니다. 해야될것은 하여야 되겠지요. 차후에 결재를 어떻게 할것입니까? 우리는 서울시민의 명을 받어서 해야되겠다. 또 시장도 시민의시장이라고 보아서 시민의 대행을 시킨것으로 시장을 모셨든 것입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실정을 볼적에 독재아닌 독재 민주주의 민주주의하지만 독재를 할려면 제대로 하시라 그것입니다. 독재도 아니며 민주주의도 아니며 군국주의도 아닌 이러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있고 우리 정부가 엄연히 있는 이상에는 결의했든것이라도 시민이 원하지않고 시민이 싫다고하고 시민이 부결하다면은 시장은 의당히 거기서 시민의 요구하는것을 좀 들어주셔야 될것이에요. 또 시민의 요구가 무엇인가 이목을 기울여주셔야 될것이라고 보아서 그 결의를 금후 어떻게 할것인가 우리는 이것입니다.

요전에 확실히 부시장이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과거에 결재했으니까 지금 우리가 더 지을수 밖에 없어요. 우남회관을 지을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어요. 내가 확실히 듣고 내자신이 이것을 느끼고 있는것입니다. 차후에는 만일에 과거의 김시장이 결재했으니 금후에는 어떻게 할것인가 하는 이 문제도 대두될것이고 또 시민이 말하는것도 그것입니다. 말을 할려면 한이없습니다. 그러니 좌우간 잘못된것을 금후부터는 서울시민의 말을 들어주셔야 될것입니다. 시민이 있고서야 우리 서울시가 있으리라고 보아서 대단히 모호한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결재만이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 시민의 생활을 척도를 재어서 국제적인 체면도 보아야될것이라고 말씀 드려서 될수있으면 우리시 의원과 시 집행당국에서 차후에 신중을 기해서 예산편성해줄것을 더욱 바라 마지않습니다.

(「의장」 하는이 있음)

○의장 김진용; 김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김수길 의원; 지금 여러의원께서 우남회관 문제에대해서 좋은 말씀도 계셨고 또 이 문제가 이미 권고결의안으로 되어서 집행부에 전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고결의안을 일개

휴지화로 되어가지고 현재 집행되고있는 상태에 있으니만큼 저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회가 지방자치법 7년만에 처음으로 개최된 점 아마 가장 시민이갈망하는 우남회관 공사중지권고 결의안을 낸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이것이 의례히 의회에서 가결된 것이 집행부로 하여금 이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반영 안된다는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것이냐 여러의원에게 저는 먼저 사전에 한번 묻고싶고 또 우리가 선거 당시에 여러 시민한테 맹서했던것을 다시한번 저와 여러분과 같이환기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시민에게 나가서 우리가 정당한 주장이 관철되지않는다면은 우리는 그때는 비상한 각오로서 다시한번 우리난관을 돌파해가지고 이 의회가 해산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것을 관철시켜야 되겠다는것을 맹서한바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이 우남회관을 가지고 우리가 몇몇 의원이 나서가지고 해보았자 이것은 좋은 성과를 거두리라고 보지않습니다. 여기에 47명 의원들이 일치단결해가지고 이것이 관철되어야만 앞으로 우리가 일해나가는데 도움이 되지 언제나 이 모양으로된다는것을 각오하셔가지고 하신다면 몰라도 설불리 건드려가지고 항상 의회에서 가결되는것이 집행부로 하여금 반영되지않는다는것은 반영되지않는다는 그러한 전혀 무시당한 전례밖에는 남겨지는것은 없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우남회관에대해서 신중히 생각한 결과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의원들과같이 이 우남회관 공사중지 권고안이 관철이되지않을때에는 우리 의회의 해산이라도 각오하고 이런 확고부동한 의사와 합치되지않는다면 이 문제는 왈가왈부해보았자 소용 없는것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 신년도예산에 가서 이것을 삭감한

다 의회에서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정치적인 알력이나 시의원 여러분들 신분 보장이 되지않는다든가 어떤면으로 트집을 잡어가지고 이런 경우가있었을때 이것을 어떻게 받겠다든가 하는 이 확고한 각오를 가지고서 추궁하신다면 이것은 대수롭지 않다고 보아요. 다시한번 집행부어나 사무당국에 그래야 소용없으니 더 이상 이것가지고는말 하지않기를 원합니다.

(「의장」 하느이 있음)

○의장 김진용; 전중남의원 말씀하세요.

○전중남 의원; 지금 김수길의원께서 아주 훌륭한 설명을 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만은 시의회에서 건설안을……권고결의한것을 보내서 소용이 있다 없다 이것 생각 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160만 시민을 대변하는 시의원으로서 시민이 원하는 일을 해주어야 되겠다는것이 아마 의원 여러분들의 중요한 책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의원 여러사람이 했든 안했든 또 단결이 되든 안되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대로의 시민이원치않는 일을 해서는 아니되겠다. 또 시민이 가장 원하는 일을 해달라는것이 아마 시의회에 청원 혹은 진정서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등등의 건으로 보아서 가장 급을 요하는 서울시 시민으로 보아서 하수도공사 또는 도로공사 같은 등등의 건이 산적해있기때문에 이런 급을요하는것을 먼저해달라고 하기위해서 이것을 차후로 돌리는것이 좋지않느냐 이런 집행중지권고안을 냈든것이에요. 무슨 해서 소용이 많이있느냐 없느냐 하는것은 집행당국에 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요점은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전반에 결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집행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있으며 여기

에 대한 확실한 회답을 해달라는것을 우리가 요청했던것입니다. 여러의원들이 여기에대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만은 제가 집행당국에 한가지 더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것은 만일 88년도 예산에 2억5천만원이 올려있다고 해서 이공사를 집행하겠다고 했으면 90년도 예산에는 이것을 어떠한 방향으로 하겠느냐 하는것을 한가지 묻고싶습니다. 이것을 준공한다면 별문제겠지만 준공을 못하고 준공하기위해서 90년도 예산을쓴다. 어떻게 하겠는가 이것을 나는 집행부에 다시한번 질의하고자 하는것입니다. 만일 지금 공사를 중지 안하고 반쯤 쌓아놓고 중지를 한다면 집행부당국자들의 입장만 더한층 곤란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점 충분히 집행부당국에서 고려하셔가지고 신년도 예산문제에는 어떻게 하겠는가 또는 신년도 예산에 반드시 세워서 이 우남회관을 한사코 해야 되겠는가 않겠는가 하는것을 저는 재차 질의하고자 하는 것이니 충분히 여기에 대한 회답을 해주시기를 부탁하는 바이올시다.  
(「의장」 하는이 있음)

○의장 김진용; 집행부에서 답변해주세요.

○부시장 신용우; 저의들이 88년도 예산을 그대로 집행을 하고있습니다. 하고있는것은 이것은 여러 방침이 있습니다만은 저의들이 하고있는 일은 자치법에 작정이 되어가지고 있고 또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민주주의국가…… 민주행정을 하고있는 관계로 저의들이 88년도에 달하는것은 집행해나가고 있다. 이것은 민주주의적인 행정을 하고있다. 또는 자치법에 맞는 행정을 하고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고 그외에 말씀드릴것은 저의들이 예산은 집행을 하고있는것이고 또 이것 이시민을 위한 일을 한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집행하고있습니다. 권고결의안의말씀이 그우남회관 자체



를 반대한다는 구실은 제가 그렇게는 느끼지않고 또 급한일도 많이 있는데 그 급한 일을 하지 왜그러느냐 하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기때문에 저의들은 급한 일대로 처리할 방안을 강구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을 모색 한다는것을 제가 말씀 여쭙것이고 그러면 신년도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신년도예산은 12월의 정기회의에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정기회의에 내놓을양으로 지금 예산편성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신년도 예산에도 우리는 사안자체가 아까말씀하신바와같이 금년도에반하고 내년도에 받을마저하게되고 이렇게되는 말하자면 꼭사업의 성격을가지고있는 까닭에 신년도에도 예산을 저의들이 낼려고 지금 준비를하고있습니다. 내어서 일후에 심의결정을 받을려고 준비를 지금 추진시키고 있습니다.

( 「의장」 하는이 많음)

○홍순우 의원; 이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건설위원장으로 부터 긴급질의가 있었고 거기에대한 부시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여기에 상정해가지고 오늘 원 종일 질의를 해보았자 결정이 안나올것입니다. 그럼으로 말미암아 우리 회의규칙 제46조에 의해가지고 토론은 이만침 종결하고 이것을 정식으로 아까 부시장님이 말씀하신것과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제출한다고 했으니 그 서면을 받은다음에 또 토론하기로다가 동의하겠습니다.

( 「찬성이요」 「재청이요」 하는이 있음)

○의장 김진용;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의없으시지요?

( 「있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동의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다니 홍순우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 거 수 표 결 )

이 동의에 대해서 재석의원 39인 가가 26인 부2인 기권이 11인 이 동의는 토론종결하기로 가결되었습니다. 한시가 다 되었으니 오늘 오후에 속개하기로 하고 이대로 두시반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2시 55분 정회)

---

○의장 김진용; 오늘회의는 오후출석의원 33의원으로 이제 부터 오후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정감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순서는 물론 특별히 순서가 있을 까닭이없겠습니다만은 작성되는대로 차례차례 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 내무위원회로 서 감사한바 보고해주십시오.

---

## 6. 시정감사보고

○내무위원장 이응린; 전차회의에서 결의에의해서 내무위원회에서 감사한결과를 보고해드리겠습니다. 여기내용에 “미수” 프린트가 더러 있습니다. 양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낭독해서 보고해드리겠습니다.

시정감사결과보고에관한건

수제건에관하여 거10월30일부터11월12일까지 2주일간에공 하여 실시한 시정감사에있어서 당내무감사반소관의 감사결과 별책과여하옵기 자이보고하나이다.

.....  
(참조)

내무국소관 감사보고서

(뒤에 실음)

.....  
다음소방과소관에대한것은강을순의원이말씀하겠습니다.

○강을순 의원; 내무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적십자회비에 대해서 요약해서 한두가지 말씀드리려고합니다.

중구구청 성동구구청 여기에서 책임자의이유서를 받았읍니다. 거기에서 무엇이냐하면 적십자회비에 대해서 동으로 영달되는 금액에서 공제금액 188만4천환 혹은 성동구청에서 약 52만환 공제한 이유서를 받은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제출해드리겠읍니다만은 이유서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우선 각종세금징수할것이 많이있읍니다. 공무원의 책임상 공제했다는 이러한 과한문구입니다. 그러나 엄격히 따지고본다고하면은 이것은 유용이 사실일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제4장 위생경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읍니다.

위생사무는 단기4288년 12월14일자 대통령령 제843호 청소및接客영업의 사무관장에 관한 임시조치령으로 서울특별시 시장 및 각도지사에게이관되어 경찰로 하여금 그 사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소관사항중 시비로 운영되는 청소사업에 대해서 그 주무당국인 시경찰국 보안과 위생계를 비롯해서 위생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바 현재 160만 시민의 생리적 부산물로배설되는 과대한 양의 분뇨 진개등의 오물을 적기에 일소하여 수도를 깨끗한위생도시로 만들기에는 예산 면이나 설비면에 있어서 미흡한 감이 불소하며 금후 주무자들의 성의로서 끊임없는 연구와 검토가 가일층 요청되는바입니다. 그래서 실지 답사 진상을 파악한 결과 분뇨차에 대한 그 대수의 증가를요하는 서와 대수의 삭감을 원하는 서가 있어 이를 재조정하여 배당하여줄것입니다.

다음 시내의 공동변소 110개소와 공사중에 있는 2개소로 되어있는데 과히 필요성이 없는 장소에 설치된것이허다히 있습니다.

다시 예를 들어 말하자면 대중이 많이 모인데에 공동변소가 설치되어야 될터인데 예를 들어 말하자면 현저동 빠-스중점같은데 그리 사람이 많이 없는데에 공동변소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변소관리인의 일당이 불과 하로에 2백환입니다. 그 2백환을받어가지고서 성실성있게 관리를 할수가없을 것입니다.

어떠한 지역에서는 분노처리장 또는 분노저류조가 넘어서 부근주민에게 예를 들자면 마포 분노처리소를 볼것같은데 그 높은데에 위치한 관계로 밑으로 흘러서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있는것입니다.

제3절 청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경찰국에서 직접관리하고있는 청소차를 일선서로 배당하여줄것을 원합니다. 그이유는 본국에서 직접관리하는 관계로 관내실정에 부합되지않는 경우가 허다하여 실제로 필요한 개소에 차를 돌리지 못하는수가 많을뿐만 아니라

운전수에대한 인사권 조차 서장에게 없으니 감독상에도 애로가 있고해서 작업능률의 향상을 기할수 없으므로 청소차는 전적으로 일선서에 배당시켜 서장부책하에 운영토록 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제4장 청소비 경리사무취급에 대하여 각종입찰에 방법을 합법적으로 하지않는 서가 허다했드렸습니다.

또한 급여소득을 비롯해서 각종원천과세를 공제해서 은행에다 입금을 한다든가 또는 세무관청에 납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금액을 심지어는 한 7 8할씩 서에서 보관한 예가 있었습니다. 그것을보관하고있다는 확증은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 보관액 금액조차가 공금횡령이라고 단정하지않을수 없는것입니다.

다음은 소방과 소관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해드리겠습니다.

.....

(참조)

소방과소관 감사보고서

(뒤에 실음)

.....

이상 내무국소관사무 감사결과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장」 하는이 있음)

○의장 김진용; 네. 김의원 나와서 말씀해주세요.

○김동순 의원; 우리 서울시민의 재산과 생명의 직접관계가 되는 소방사무 관계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정감사 결과에 지금 내무위원장 및 강을순의원으로부터 보고가있었습니다 만은 소방 기구를 현재 국가경찰에서.....

즉 치안국에서 부터 나온 원인이 왜놈시대에 식민지제도에 서 실시된것을 그때부터 경찰력에 보강책으로서 일단유사시에.....대한민국의 독립운동 기타 반제의 운동의 붕기에 있어서 경찰력을 보강해서 단합했는데 이 병력을 전에 보충을 받을려고 하는 이러한 견지에서이러한 시책이 근 40년 동안 써 내려왔습니다.

지금 그 일정시대에 하든 그 행정기구를 그냥 답습하고 있어요.

미국이나 일본의 예를 본다고 하면은 소방 상무관이 있어가지고 소방사무를 담당하고있는데 굴욕을 당하는 우리로서

이 골육을 벗어나는 의미에 있어서도 시립소방소를 가질수 있는 방도를 불원간 마련하여야 될 필요성을 느낀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현재 소방세를 징수한 관계를 보니까 약5할 밖에 징수가 안되었습니다. 그 원인을 따져보았더니 호별세와 동일한 고지서가 나가는 관계로 액수가 많아서 잘 징수가 안되는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로 이제 부터 소방세를 따로 고지서를 발행하는 방법을 강구할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현재 이 인원이 조정이 되지않는다 하더라도 한 4백명이면은비변소방원으로하여금 수도세와관련지어가지고 소방관으로하여금 징수할수있는 이문제를필요할줄로생각합니다. 그리고지금치안국의보안과에서소방조정을 하고있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것입니다. 각 시별로 소방대가 조직이 된다면은 경찰하고 분리하면은 치안과에 그러한 기구도 필요 없는것이며 시 자체로서 얼마든지 불끌수 있는것이에요.

소방상무관이 라든가 소방관을 한사람 두면은.....

중부서 같은데에다 한사람 두면은 일단 유사시에 명령계통 하나로서 후원도 받을수 있습니다.

이러한것으로 되면은 반듯이지금 강을순의원이 말씀하셨지만 명령을 잘지키지않는 혹은 자기들의 의사에 맞지않는 이런 사람들을 결국은 몰아보내는 장소밖에 되지않습니다.

그러한 폐단이 없도록하고 넉넉히 해나갈수있는 이러한 기구에서 좀더 많이 집행당국이나 의원 제위께서도 우리 대한민국 독립이후에 왜놈 시대의그전철을 밟아서 해왔다고 하는 점을 잘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점을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여야 할것이며 이번

시정감사에서 통절히 느낀바가 있어서 이것을 시간을 허비해서 미안합니다 만은 보충 설명을하는 바이올시다.

○의장 김진용; 내무위원회의 시정감사 보고는 이로서 끝났습니다.

그 다음은 건설분과위원회에 감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위원회간사 방동석; 위원장이 보고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건설분과 위원회의 사무감사 내용이 방대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본의원이 대독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서 언

본종합보고를 작성함에 있어 각자가 담당별로 감사한 결과를 보다정당하고 보다정확하게 파악판단함으로서 과거의 시정으로부터 미래의 시정에는 전제혹은 부패등의 폐단이 시정되며 집행자들로 하여금 새로운 각성이 있게 함으로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전후재건부흥을 기할것을 촉진하기위한 방향으로 본보고서를 작성한다는 사실을 우선제언하는 바입니다. 본위원회가 단기4289년10월29일부 본회의에서 결의한바에 의하여 시정감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보고함에 있어 관내각과별로 분리해서 개별적인 부문을 개설함이 본시정감사의 전체적인 면을 종합함에 필요할것으로 사료되며 이하기본론을 기술함

건설국기구표

관리과(운수사업청)

토목과

도시계획과(도시계획위원회)

수도과 영선과

여재한 서울특별시 건설국관내 각과별로 본위원회의 전문위원이 주동되는 감사반을 제1반 제2반으로 편성하여

제1반은위원 방동석 노승환 김석근 이동률로 정하고 그 감사대상을 관리과, 도시계획과, 운수사업청, 도시계획위원회

제2반은위원 具喆會 김경원 조영석 최봉수 김재광으로 정하고 그 감사대상을 토목과, 수도과, 영선과로 분리 실시하였던 것임

### 1. 관리과

당해과에는 서무계 수납계 자재계 용지계 운수계로 사무분담이 되어있으며 운수계산하에 운수사업청이 독립되어있음

(1) 서무계의 감사를 실시한바 일반서무를 취급하는 주무계로서 공문서처리에 있어 정확성을 기하지 못하고 있으며 미결 부결 기결 진행등의 정리조차 분명치않고 있는중에도 완결서류철에 대한 목차조차 기록치않고 있었으며 문건부전반에 오식우는 설락이 허다하여 있는 점으로보아 주무계장이 평소집무에 불충실하였다는 점과 자기본래의 창의성이 전연반영되어 있지않았기때문에 예하면 서류함의 정돈같은것도 역시 무질서하게 방치되어있음

### (2) 수납계

당해감사에 있어서는 주로 운수계와 관련이있는 관계로 수납대장우는 전표에는 별무착오를 발견할수없으나 도로손상부담금의 징수업무는 상당한 침체상태에 함입되어있어 단기4288년7월1일부터 동10월31일까지의 조정액1억8천4백2십5만3천1백2십1환에서 징수액이 1억5천1백2십6만9천3백4십3환으로 그 미수령3천2백9십8만3천7백7십8환등으로과중하게 각개운수업자에게 체납되어 있기때문에 최대한의 독촉이 없이는 단시일내에 부과액의 완납을 기하기 곤란함을 시인치 않을수없음



### (3) 자재계

본감사시행중 최대의 계수관계의 불편과 재고량의 미확인으로 서면상의 검토만으로서는 도저히 본자재계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상의 중대성을 파악하기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으며 장부상의 체계가 유기적으로 조직되어 있지않기 때문에 수자적으로 년도별하여 정확한 사실을 추궁내지 해명할수 없었다는 것이며 일개의 독립될 출납대장이 성립될려며는 한개의 전표나 보조장부와 같은 기초적근거가 없이는 취급자본인의 기억력에 의존한다는것 이외는 다른도리가 없을 것이며 사고우는 오산등으로 기계정에 그 항목을 달리찾아볼수없음은 의식적으로 계획한것이않인 이상불가사의의 일임을 짐작할수있었음

연이나 본자재계는 광대한 지역에 5개처에 현장창고를 보유하고있는 관계상 현장관리소우는 창고책임수위의 책임을 수자적으로 무를수없게 되어있으니 현장창고에는 반드시 비치해야할 출납대장과 입고지시서우는 출고지도서등이 비치되어야 할것이며 일상카-드같은 것으로 정확한 물자의 출납잔고계수자를 명백히 해야할것임에도 불구하고 우5개처 현장 창고관리소에는 전연 이러한 서류가 없다는것은 본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을 차단하는 것과같은 사실임을 또한 인정하게되는 동시에 수도자료관리소의 예를들면 소장이하직원과 고원계8명이 상주하고있는중에 현재고조사를 실시한 결과 본청대장에 있는 물자의 수자와 현품의 수량에는 막대한 차이를 발견하였으니 예하면 50모와사관등 속은 본청재고대장에1만6천9백8십2본에 현품은 대장보다 약 7백본이 증가되어있다는 사실은 이론상의 원칙으로나 실제상의 사례로보아 있을수없는 일인데 반하여 세멘트, 석회 유산○토 목재등은 전혀

현물을 조사계산할수 없을상태에 있으니 내용인즉 1백평내지 2백평건물의 내부에 되는데로 적재되어있으며 가량해서 추측 수자를 가지고 대장을 맞추려고 했으나 현품을 계산하는 형식과 방법이 각자다름으로 인해서 차현장이 정리되기 전에는 확실한 수자를 계산할수 없다는 결론에 지하고 말었음

연이면 대장과 현품의 차이를 발견하기 위해서 본건 물품대장에 기초가되는 배당통지를 물품청구서등으로 전체출납수를 대조하려고 했으나 장부와 장부사이를 절맥했기때문에 수불 조월이 계통적으로 지관되어 있지않기 때문에 어느 때 누구의 과실 사고 오기등으로 이와같은 현상이 초래되었는지를 해명할수 없게되어있으니 중간에 재고조사라고 해서 전장부에 잔고와 현품이 상위함으로 불법적으로 폐기하고 신장부를 작성함에 있어서 임의로 당시의 재고량만으로 기입하여 시작되었기 때문에 금일의 현실잔고로서 과부족을 추궁할 도리가 없게되었음

본건 자재계가 위치하는 필수물자의 보관책임에 있어 서류상의 불비로 초래되는 결함보다 문서정리상의 무성으로 인하여 파생되는 현상은 의당계통적으로 결재권을 행사하는 주무과, 국, 장에게절대적인과오가 있다고 확인하는 것이니 연1, 2회식의 정기재고품 조사라든지 재고품보고등이 작성되어야만 할것시오 책임국, 과장으로서는 일일히 출입고의 신청서에 주의를 경주함으로서 수시로 물품대장의 검열이 있었어야 할 것은 물론임에도 불구하고 단1차의 검인조차 발견할수없고 현지창고에는 하등의 비치서류를 설치치않고 단1주무계만이 신청서1매로 통괄하여 취급했으며 대장에 기입되는 절차에 있어서도 신청서이외의 참고서류는 전혀 소각해버렸으니 예하면 운반입고시에 배달편으로부터 영수한 송장(사

본)조차 보관하고 있지않으니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무슨편을 이용해서 누구의 손을 거쳐 입고되었는지는 전혀 탐지할 길이 없음

특히 본청물품대장에조차 재고품이 허다하게 실락되어 있으며 단일개의 대장에만 의존하고 있는 형편에는 만일 대장에 실락되어있는 물자는 중간에 부정이 개입되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역시책임을 무를수없으며 중대한 자재를 막대한 양으로 보관하고 있다는 창고가 잠을쇠한개도완고치 못하고 주위의 철강조차 불완비하기때문에 야간도난을 당할 우려가 다분하며 민가가 밀접되어 있는 관계로 화재가 발생할 우려조차 불무함

이상과같은 사실등 예로해서 연3일간에 걸친 1차감사는 본자재계에 있어서는 불능하게 되었으니 사실상의 과오를 범한 책임의 소재를 묻기전에 여사히 처리치 않으면 안될 이유의 유무라든가 우는 이러한 처리를 10년래지속하는 중에 어느누구 이점을 발견치 못했든가하는 크다란 의아심을 금치 못하면서 서울시청의 자재보관에 있어 이렇게 등한시되어 왔다는 현실을 ○인은 한심한 생각으로 슬퍼 마지않는바임

#### 4. 용지계

당계는 주로 시유지우는 하천등의 사용허가관계를 취급함으로서 타계보다 비교적 사무적인면에 정리가 되어있으며 당계의 성질로 보아 용지에 대한 허가권의 여부만을 선행시키지 말고 허가이후의 감독에 더 주력함으로서 집행상에만 유감없기를 기해야 할것으로 사료됨

#### 운수계

당계는 주로 운수사업면허와 도로손상부담금부과사무를 취급함으로서 수도서울시의 비약적발전과 함께 운수면

이 점유하고 있는 비중등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은 재언을 불요함 연이나 본계가 취급하는 운수사업면허 관계는 종래 다각도로 복잡한 이면이 내포되어 있으니 예하면 택시회사 버스회사 화물차회사등이 본건사업 면허만 가지고 타인의 자가용을 절체받아 중간수수료를 징수하는등 업자조합이 각개단위로 조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중의 수속절차를 밟아 과중한 개인의 부담을 초래하고 있으니 내용인즉 택시와 같은 것은 각자차량소유자가 매월단위로 조합에 2천환식을 납입하게 되며 소속회사에는 8천환식을 납금해야 그달의 운행증을 교부받을수 있어 운행할수 있게 되어 있으니 여차한 사실등은 중간회사체가 본사업면허를 가지고 중간역할을 담당한다는 이유로 금일과 여한 현실이 되고 있으니 개중에도 차차량등에 부과되는 할당금액을 매월징수하여 수개월 사용 또는 유용하고 있는 실정임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임

특히 차량의 대수가 일정시대에 비해서 약3배의 수자를 고시하고 있으니 승용차1,950대 버스 818대 화물차 3,066대 짚2,702대 계 8,536대가 가동함으로 자연히 교통사무량이 증가됨은 필지의사실로 운수행정에서 있어서는 도로손상부담금과 세금까지도 단일과에서 취급되어야 할것임을 짐작할수있으니 당운수계가 부과하는 도로손상부담금도 세무행정과 병행하여야 될 성질의 것임은 물론 집행하는 과정에서 횡적연락이 원만치못한 점등을 발견할수가 있었음

운수사업청

총무과

당사업청을 감사한 결과 일언직하에 인위적으로 운영되는 일절의 부패요소를 숙청하고 사무적인 면을 혁신하기전에는 본사업청이 현상유지는 불가능할것이며 이이상의

운영에 기대한다는 것은 역시 무모한 처사임이 증명되었으니 총무 업무 시설의 3과로서 주무과의 감사에서 첫째 단기 4286년11월17일부로 당시에서 관리하게된 이후로 부채맞이자 전력료 교통세 양곡급물품대금합계 1억1천6백4십9만9천환이라는 적자를 단기4289년10월30일현재로 표시하고 있으며 막대한 시설과 시가 보조한 5천1백만환을 충당하고도 매월1백5십만내지2백만환식의 적자를 불면하고 있으니 그 이유 인즉 필요이상의 인원을 채용하고 있는중에도 시가지시하는 하등의 법적근거가없음에도 불구하고 급식비라는명목으로 매월인건비중에4백7십2만5천8백환이라는 금액을부정지출하고 있으니 기누계가물경1천2백여만환이라는 거액에달하고있으며 전차사업비우는 유지비지출만해도단기4289년1월부터동10월 말일까지 3천9백9십4만환이며 자동차유지비5천3백8만6천환으로 수입보다지출이과다한중에도 제지출항목에서는 물자구입에1할내지2할의운송 공임등을가산한다는명목으로 허다한부정처리를발견하였으니 기중에도자동차부속구입대금중에는 공임을가산한내정가격을가지고 입찰에부했다는사실은 주무과장으로서는범해서는안될서류상의과오가아니면 부정업자와 야합되어있다고 단언할수없음

특히 단기4288년5월11일자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공대지사용에 대한 건축허가건에 대해서는 당해총무과장으로서는 당청후생식당을 경영한다는 구실로 건축허가를 수하여 건축한 다음 소요업자로부터 건축비이상의 보증금과 매월 임대료를 영수하면서 본건본목적인 당청직원 후생용식당과는 별개의 영리를 취득하고 있음은 이해하기 곤란하며 총무과장으로서는 주선하기 까지에 지하였다는 사실은 대단불미한 처사라고 아니할수 없음 연이나 주무과장으로 위치한자 일반서무

처리에 무능하였을 뿐외라 평상시의 집무능력등을 참작할때 자기의 권리만 행사하고 자기의 책무는 전혀 이행치 않고 있었음은 공무를 집행하는 자로서는 도저히 묵과할수 없는 행위임이 증명되었음

#### 업무과

당해운수청의 중수과로서 매월막대한 지출면에 적자를 불면하고 있으면서 재래의 인원인 전차부에 66명 자동차부에59명 계156명이란 인원이 실질적인 운영면에 필요한 것인가는 수입과 지출과 대체대조에서 분명히 표시되고 있는바와 같이 현재의 인원을 정비축소하고보다 능동적으로 실무에 중점주의와 적정배치로서 최대의 능률을 기할 것은 물론 전차부에 있어서 중간무임승차를 철저단속하여 어느종업원의 개인이익을 목적하는데 이용하는 폐단을 금하고 대표우는 검표에 가일층 당해업무과장으로로서 심심한 주의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면에는 전혀 자기의 성실성을 발휘하지 못하였다는것은 중대한 일이며 국한된 조건과 제한된 인사배치로서 10년20년래 이동이라는 것을 모르는 관계상 기계적인 책임만을 완수하면 가하다는 관념을 일소하여야 할것이며 자동차수입면에있어 정비관계를 구실로 막대한 부속품을 구입하였다는것은 운행일수 우는 수입액등을 참작할 때 과대한 감을 금치못하게하며 특히 구입등에 수선공임을 가산하여 입찰에부했기 때문에 실제적인 면에서 필요이상의 경비가 지불되었다는 사실 또한 무시할수없음

#### 시설과

당해과는 현직인원27명으로서 시설에 대한 전반에 당하고 있는데 연평균약40건이라는 사고를 발생시키고 있는 현상에 기사고비는 철로의불비우는 철로변에 인근해있는

건축물등의 장해와 통행인의 증가를 방지할것은 물론이려니와 각종기관이 정비에도 만전을 기해야할 책임이 있다고 인 증하는 동시 운전수및보조운전수등의 평소훈련과 각별한 단 속이 필요함으로서 출퇴근에 성실할것을 기해야 할것이며

운휴차량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시일내로 수선하게 함으로서 최대한의 운행대수를 보장해야 할것으로 사료됨

## 2. 도시계획과

당해과에있어 계획계 건축계 환지계의 3계계로 분담되 여 있으며

1. 계획계는 주로 시가지계획조사, 사도축조경계명시측 량 풍치지구등의 대한 허가사무급계획공원에 대한 기획 기타 공사실행등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으로 사무적인면은 어느정도정리되었으나

풍치지구관계는 단기4289년1월1일이후로 동년 10월 말일 현재까지 56건에 사후감독이 철저히 못한감이 불무함은 특히 개간허가에 있어서는 계약조항 즉 석축공사를 선행시키 는것과 자연풍치를 보장한다는 것등 조항을 완전히행치 못하 고있는 형편이며 단기4288년6월14일부로 허가제인 종로 2가 39번지의 신화봉소유의 건물등은 허가 규정에엄연히 위반되 여있는 관계로 당해계로 하여금 단기4289년9월14일부로 우 허가진행을 중지했으나 계속공사를 하여완축하는 등의 폐단 을 노출하고있으니 차사등은 당해계의 집무상태가 태만하다 는것을 여실히 증명하였음

## 건축계

당해계는 도시계획령 제130조에 의거하여주로 건 축물의 허가사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허가이후에 건축이 완성 되기 까지의 전체적인 면을 감독하고 지도한다는 사실은 수

도서울의 백년대계에 있어 시가지계획령에 의한 건축물이 정비되어야한다는 점과함께 금일과같은 재건도상에 있어서 더욱 중대한 부문이라고 인정하지 않을수없음

본건축허가는단기4288년8월15일부로 1층30평이하 동4289년2월21일부 2층연50평미만은 단히구청장의권한으로 건축허가가되기로 방침이결정되어 실시하고있는관계로 본청 당해계의 취급사무는대건물 풍치지구등중요한대상만을 허가하고있는형편으로 본민원서류처리에있어서는 신속우선친절주의로임하여야할것은물론 허가서류에제시되어있는바와동일한 건축물이 동일한대지에건립되는가를 정확히 감독할의무가선행되어야할것은 재언을불요하는바로서 당해건축계의금년도1월1일이후 10월말일현재의총접수건수는 무려1477건에 가옥동수3,044동으로 방대한건축부흥을 상징하고 있음은 경하할일이기는하나 당국의 사후처리에 있어서 허가사무가 지니고 있는바 감독의 불충분으로 환지에대한 위치 우는 대지에대한 지역성과 건평에 대한 가감수등 허다한 복잡성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년10월말일 현재서류상으로 완결된 건수가 불과45건밖에 안되는 실정이니 허가사무가 가지고 있는 중대성은 전혀 행정집행면에 반향되어 있지 않다는 실증을 여실히 표현하고 있으며 차는 당해건축계직원이 전혀 자기의 권리행사만 남용하고 사후수급에 있어서는 책임있는 의무를 망각했다는 것을 수자적으로 증명하고 있음

연이나 민원서류에 있어서는 여하를 막론하고 접수일로부터 최단시일내에 결재를 완료하여 제출인에게 허가장을 교부하여야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접수일로부터 보통20일 내지30일을 요하는 형편이며 제출서류의 제증명 우는 납세필증설계도등으로 과중한 중간비용이 소요됨은 건축주에게 2중



의 출혈과 동시에 시간상으로 다대한 노동을 강요하게되는 형편에 있음

더욱이 본건축계의 허가서류에 있어 완결을 보지 못하고있는 사정인즉 허가증교부에 착공계준공계로부터 현장 검사를 필해가지고 비로서 입주허가증을 교부하게 되는데 본 건축계의 실지사무처리에 있어서는 착공계조차 제출되어 있지않으니 관청사무처리에있어 한심한 생각을 금치못하며 단 기4288년도분의 건축건가서류전반이 여사한 형편으로 미결상태에 노여정리할 방도가 없게되었으니 본도시계획과의 주관계에 사무감사는 불능에 이르게 되었으니 주무과장은 하유로 이상과같은 민원서류에 대한 결재권만 행사하고 사후감독에 대해서는 전혀등한시해 왔는가를 추궁치않을수없으며 만일사무계통적으로 결함이있으면 차를 즉시시정하여 황적연락이라도 취하여 가능한 방법을 채택치못하였는가는 의문과 의아를 금할수없는 바로서 여사한 본청집행에있어 태만성은 각구청 건축과건축계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하였으니 차는 공무를 처리하고 집행할 관리로서는 도저히 용납될수없는 결과이며 엄연한 시행조례에 의한 허가사무에있어 자기의권리행사에만 급급하고 결재이후의 수속절차에 의한 감독권은 포기하다싶이 하였다는것은 범법행위였음을 지적하게됨에 주무국과장은 의당책임을 부해야 할것이며 이러한식으로 건축행정이 계속된다면 건축하는데 구태여 허가를 수하여야한다는 이 유가 성립될수없을뿐외 당해계에사무감사같은것을 실시한 의 의조차 무색해짐을 금할수없음

특히 건축허가 민원서류제출시에 요하는 부대서류  
중

### 1. 면허세납세필증

## 2. 시세납세필증

## 3. 국채소화필증

등증빙서류가 첨부되는 관계로 자연히 번잡하게되어 청원자들에게심대한 희생을 강요하게되는 형편인데 차는 가급적으로 법적수속하에 시정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됨

### 환지계

당해계는 재래환지증명관계를 취급했으나 단기4289년춘기부터 각구청으로 사무가 이관되었으며 환지증명발급총건수5007건으로 환지에 대한 도로정리공사를 시행하고있는 형편이며 단기4289년1월이후로 10월말현재 도로배수공사는 단1건을 완료했을뿐 토지계 정리에 관한 일절사무를 취급하는 면에서 타계에 비교해서 내무면에는 형식상으로라도 정돈되어 있는편임

### 도시계획위원회

본위원회는 단기4285년 6월27일부 규칙제9호로 제정되었다가 단기4286년8월12일부규칙제12호로 개정되어현행규정으로 도시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연구하는 동시에 시민의 생활전체에 대한 도시계획을 설계우는 실천하는 방향으로 시장의 자문에 직접응할 것을 목적함으로 조직되었든 임의단체로서 수도서울의 확장공사와 아울러방대한 인구를 포용할 제반시설등의 부차적문제를 연구실천함에는 여사한 기관이 필요한 것으로는 사료되나 본위원회가체계를 갖추고 발족된 이후로 시비로 매년 근1천만원이라는 막대한 재산을 지출하면서도 현금에 지하여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은 기구자체의 불합리와 아울러 과중한 인건비우는 수요비지출에 기인되는 바로서 현기구에 상임위원1명에 연구원5명촉탁19명사환1명으로서 연구원이가지는 연구의 실

과나 촉탁이 집행하는 자료등은 과거 어떠한 실효를 집행부에 기여했는지는 전혀 의문시되며 이 역시필요이상의 인원을 배치수용함으로서 하등본자체에는 이익이 없다는것은 결과적으로 유명무실하다는것으로 밖에○ 표현할수 없음

연이나 단기4288년도 예산면으로만 보더라도 제급여에 4백4십만6천5백4십7환○수요비에 4백2십4만4백4십환 잡비에 3십1만5천백6십환 계8백9십6만천7백5십1환으로 인건비와 제잡비 2항목으로 전액이 소요지불되고 있으며 당해 촉탁19명은 본위원회의 업무와는 전혀 한계가 분리되어 있는 각구청 우는 본청에 배속되어 건축사무를 조장한다는 명목으로 되어있고 연구원 역시 연구한 실적우는 실황이 사무적으로 기록되어있지않는 점등을 참작할때이는 본위원회의가진바사명과는 판이한 실태를 보여주고있으니 귀중한 시비를 지출한다는것도 무리거니와 본위원회와같은 단체가 존속함으로서 실질적으로 도시계획발전에 불가결한 기관이 생기치 못한다고해도 차는 판명할 도리가 없을것이니 본위원회는 지속적인일내에 시장만에 응하는 자문기구를 해체하고 전체인원을 개편하여 명실공히 시민의 생활 계획이요 우는 도시의 발전계획만을 위하는 기구체가 되어야만 할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서만이 본위원회가 존립될수 있다는 것을 단언할수 있음

연이나 본위원회는 일개 규정안만으로 운영되어 있는 형편이며 법적으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0조에 의거하여 예산을 보조받는 형식을취하고있으니 차는 서울시의회로서는 예산을 통과시킴에있어 법적한계 집행상의 직능등으로보아 법에정하는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여야할것이며 특히 본위원회가 가지는 국가계획 우는 수도의 발전계획등에있어 절대 불가결하다고 하면서 자기의 독립성을 발휘하지못하

고 한개인에게 부수적인 자문에만 부응해왔다는것은 본위원회의 성격과 활동분야를 축소케하는동시에 동일한 예산을 소비하면서도 자기의 권위와 위치를 향상시킬수없다는것은 자연형상에 반역하는것으로 본위원회는 서울시 행정기구속에서 독립되어야할것임을 강조치않을수없음

### 3. 수 도 과

당해과의 감사를 실시한바 총공사집행건수 단기4288년 7월1일부터 단기4289년10월31일까지의109건중 수의계약건수가 23건에 경쟁입찰건수가 36건으로 총도합 공사건수59건이었으며 기중 23건은 대부분이 특권층에 속해있음으로 특리를 부여케하는것으로 전체건수에 약4할을 점유하고있으니 여하한 사실은 입찰비례에있어 특별취급이 과다하다는것임 연이나 차수의계약금액이 23건에 2억2백2십9만5천4백9환인데 반하여 36건의 경쟁입찰면에있어 금액1억8천7백5십6만7천9백십5환으로 되어있으니 수의계약의 건수와 금액과를 경쟁입찰한 건수에금액을 대조할때 기차액1천4백7십2만5천4백9십4환이 더 초과하는형편이니 결과적으로보아 대공사만을 선택하여 특정업자에게만 한해서 특혜를 부여했으니 3백업자를 지정해놓고있으면서 전체업자를상대로 균등한 입찰기회가 허여되어야할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실이계속되었다는것은 대단 불미한일인것임

특히 당해과로서 업자지명권을 장악하고있다는것을 구실로 자유재량것 소수특권층에만 중첩된기회를줌으로서 다수의 출입업자들은 자기의 기업상태를 유지할수없게되며 이로 인하여 그들의 종업원의 실직을 불면케했으며 중소기업체의 비참한 말로를 연출케하였음은 중대한 집행당국의 책임이아니라고 할수없음

예를들자면 수의계약을 체결치않어도될공사를 수의계약했으며 수의계약해야될공사는 경쟁입찰에 부했다는등의사례는 매사에있어 다반사로 자행하고있으니 기현상이라고 하기에는 한심한일인것임

이렇게함으로서 만리동 문제만하드래도 기위완공되어 금일에는 마포일대에는 식수난이니 시간급수니 우는 단수니 하지않을것을 착공한지이미 8, 9개월이 경과하도록 전체공정의 약4할에해당하는 공사밖에 진척되어있지않고있으며 사고발생이후로 (사고조사내용은 별첨함) 시가 직영하는관계로 부담하는금액이 수백만원이나 늘었으니 그만큼 시민에게 이중의출혈을 강요했다고 인증하는것이며 사무적인 이면에도 불투명 불체계했기때문에 각자가 개인의 주관으로만 동일한 공종 혹은 동일한공사등에있어 단가를 기시기시 상이하게처리했고 상급책임국과장에있어서는 여사한 사실들을 시정하려는데에는 하등의성의라든지 재검토했다든지의 행적을 기록상으로 발견할수없었으며 현재까지의 실지공사내역을적으면 여좌함

1. 총공사건수 109건
  2. 총공사금액 4십억2천1백1만4천9백7십3환  
내역
    1. 수의건수 23건  
우금액 2억3백2십9만5천4백9환
    1. 지명경쟁입찰건수 36건  
우금액 2억8천7백5십6만7천9백십5환정
    1. 직영공사건수 44건  
우금액 8백3십2만7천6백5십환정
- 만리동배수지공사관계감사결과 (사고분)

기

1. 도급업자 서울특별시지정업자

홍일토건주식회사사장 강 은 구

1. 공사비액면 1천8백5십만원정

1. 공사착공일 4289년5월20일

1. 사고발생원인

본배수지공사는 4289년4월18일 홍일토건주식회사사장 강은구라는자가 전기와여한 도급액면으로낙찰이된 것을 기화로 전기공사를 4289년5월20일부터 착공하였으니 사실내용에있어서 당연도급업자는 홍일토건주식회사 강은구가 공사를 착공하여 준공까지에 사용완수함으로써 하등 문제가 발생치않았을것인데 전기강은구라는자는 서울시 건설국과 체결한 계약을 무시해가면서 내막적으로 서울특별시서대문구 북아현동148번지 거주 김재학이라는자와 결탁하고 낙찰액면1천8백5십만원에서 낙찰권리금으로 2백만원을 선취수령한후 소위 하청이라는 명목하 일금1천6백5십만원정에 내밀계약을 체결하고 해공사를 진행해왔으나 해공사를 진행한지 불과1개월이된 4289년6월22일 하청인 김재학은 집행부건설국 수도과기사 윤두한 (현장파견총감독자)이가 현장에서 감시하고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심스럽게도 4289년6월19일 관급자재인 “세멘트” (42KG) 8,700대를 서울특별시서대문구 만리동 동화운수사 김호선에게 1대당 1천1백환식 부정매각 처분하여 착복하기 시작하여 동일수단방법으로 4차에 공하여 3,284대를 일금3백6십1만2천4백환정으로 불법매각처분착복 4289년6월22일 서울특별시서대문북아현동 153번지 건축자재상 광의두에서 42KG입 1대당1천1백환식 232대 계2십5만2천환정에 부정매각처분하여착복 4289년9월초순경 관급자재인 미송해

공사장에 사용키위한 자재를 약1만재를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신촌동 신촌극장건축장소에다가 은닉하여두었다가 4289년9월말일경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4가 황해제재소에 일금5십8만 환정에 부정 매각처분하여 착복

4289년9월초순경 철근환봉 약16톤을 해공사장에서 김재학이가 사용하고있는 박영진이라는 자를 시켜 장소미상 부정처분하여착복

1. 소위서울시 건설국 수도과기사 윤두한은 현장총지휘 감독자라는것을 기화로 현장에다가 관사를정하고 거주하면서 흥일토건주식회사 강은구가 직접 공장에 책임을 지지않고 내밀적으로 일금2백만환에 낙찰권리금을받고 김재학이라는 자에게 하청준줄알면서도 그청을 묵인하고 따라서 하청자 김재학으로부터 공무원이라는 위치와 현장감독이라는 것까지를 상실하고 형법제139조를 묵살하면서 하청인 김재학으로부터 뇌물로 1십만환외 관급자재 부정처분을 묵인하여주기를 약정하고 그중 전도금으로2십만환을받고 가세멘트입고 전표를 700대짜리외에 3매를 발행하였다는 점에서 해(만리동)공사는 4289년10월30일까지 준공되어 기히 서대문구마포구일대에 급수되어 식수난을 해결되었을것이나 여사한 주무당국자에 감독불철저로 말미암아 오늘까지 공사가 지연되었다고인증함

#### 4. 영 선 과 당해과를감사한결과

##### 1. 총공사건수 143건

우공사비 16억2천8백6십3만5천5십3환정

##### 1. 수의계약건수 21건

우금액 2억1천8백6십9만8천환정

##### 1. 지명경쟁계약건수 84건

우금액 13억4천1백9십8만7천2백환정

1. 공개 입찰건수 28건

우금액 6천7백9십4만9천8백5십3환정

이상과여히각종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완공 우는 진행중에 있으며 수도과의 예와같이 계약상의 모순과 문서상의 불투명 등으로 무쾌도하게 집행하고있었으니 담당자에 의중의 업자가 아니면 여하한 실력이 있드래도 입찰에 참여할수없게되어 있었음

연이나 우남회관도 거6월초순에 급작히 시공한것인데 차공사는 도안을 현상모집했고 또 세부를 다시 설계하기 위하여 4백5십여만환의 설계청부를하여 설계와함께 기초공사를 착수하였으나 지질검사라는구실로 설계변경을하여 수량에 변동이 있는데 금액에 변동이없다는것은 이상한노릇이며 설계청부를 주었으면 설계가 완성된 연후에 착공할것이지 설계가 완성하기전에 착공을해놓고 착수를하자마자 설계변경이니 하는 요동을 이르켜 이 공사를 강행하였다는 사실은 이해할수없으며 특히 서울운동장공사에 있어서도 1억5천만환이란 거대한 시비를 경주하는 공사로서 설계면으로보아 운동장전체를 미완성하게한다는이유는 차기예산을 영달받을 전제로서 임시 집행되는것으로 차공사과정에대한선이 모호하며 국제경기를 거행하기위한 시설이라면서 국가보조도 전무하니 시민의 부담으로 볼때 차는 막대한 출혈이라고 생각하지않을수없음

5. 토 목 과

당해의감사를 실시한결과 대체적으로 통일된 사무처리가없어 각직원임의로 설계하고 감독하기때문에 현실과같은 결과를 초래했으며 개중에도 조잡한 공사를 진행한예가 비일비재하였으니 기중에도 정릉천 옹벽공사에있어 작년7월경에



시공한것이 만1년도 못되어 전도되었는데 기이유로는 설계당시에 부정확한 궤상설계와 과거경험을 살리지않았고 시공감독에도 불충실하였다는것이 사실화하였은즉 주무국장담에의하면 내무부승인운운하나 기초설계를 하여가지고 승인을맞는 것이고 또현지에 부합치않는 설계에 간섭한다고하드래도 현지시찰과 조사를 면밀히한연후 설명으로납득케한다면 부당한 간섭으로 현지현실에 부합되지않은 공사를 강요하지는 않았을것이라고 믿으며 이러한 조잡한공사를 무리했으므로인해서 이중의재정을 방출치않으면 안되게된 책임도 분명한것이며 설계를 담당자및 공사를 감독한자에게대한 결함을 규명하여야할것임

특히 당해국 관하에있어서도 사무량 우는 공사량으로 보아 수위를 점령하고있는 위치로보아 타과에 수범해야될것은물론 직영공장에있어서도 실태를 파악하기에 고난한 형편에있으니 사업실태를 확실케하기위한 제반사무를 정리할것이며 제관공장에 있어서는 생산제품의 완전소화라든지 또는 생산과정에 부수되는 조건등이 구비되어있지않으므로 기개인의 유용에응하는 경향을금할수없으며 당계에 있어서는 역시 공사계약면에있어 수의 지명 공개 직영등의 방법을채택하고있는데 공정무사하여야함에도 수자적 결과로볼때 대부분이 불평불만을 금할수없는 실정이며 기시공 경위를 살펴보면

단기4288년7월1일 부터 4289년10월말일현재의 공사집행은 대요 여좌함

1. 총 공사건수 174건

우공사비2십3억2천6백6십1만9천7백7십4환

내 역

1. 수의계약건수 27건

우금액 5억4천6백십8만9백십6환

1. 지명경쟁건수 93건

우금액 십5억6천2백4십6만1천1백2십1환

1. 공개계약건수 16건

우금액 2천1백6십8만2천9백7환

1. 직영공사 38건

우금액 1억9천6백2십9만4천7백5십환

본위원회가 시정 집행사항을 감사함에있어 건설국관하의 본청감사는 완전 집행되었음으로 단기4289년11월8일부로 감사반을 재편성하여 이하 각구청 건설과 전반을 감사함에 제1반을

방동석, 노승환, 임종순 으로정하여 실시한 내용 여 좌함

중구청건설과

1. 부과계 징수계

금년도 수도사용료 조정액이 10월말일현재로 2억2천4백2십5만9천7백7십3환중 수입제액이 1억5천1백9십1만3천7백6십3환으로 7할약이 되었는데 차수입은 시세수입과 대단히 부진한 징수상황이옵고 특히 목욕탕 19개처 수도비 미납금이 1천3백만환이란 경이적수자를 정시하고있어 차는 장차 미수입액에 증가 누적을 의미하며 과년도수입의 미징액이 6백6십8만환과 합치면 10월말일현재 총미수입액이 무려 8천4백2만9천4십3환이란 수자를 나타내고있는 현실임

현재시재정이 대단히 빈곤하여 막대한 이자를 지출하면서까지 차입금을 얻고있는현상인데 시세와도 상이한 근소한 수도료징수의 부진은 확실히 공무집행 태만이라 인정치 않을수없을뿐만이 아니라 현재 경전당국의 전기료 징수상

황만 보드라도 90%에달하는 징수실적에 감하여 수도비 징수  
원 31명의 활동이 부진함은 건설과 책임자의 독려태만과 사  
무적 완만을 의미하는 증좌라고 사료함

#### 토 목 계

단기4288년도 공사건수 32건으로 차시공비 7백  
5십8만7천7백3십5환이며 대부분의 공사는 준공되었으며 공  
사진행에있어 철저한 감독이 필요할것으로 미루어 허가권의  
행사와 책임이행과를 항상 별리해서 집행할것이라는점을 재  
차 요망치않을수없음

#### 건 축 계

당해계의 접부건수는 단기4289년1월1일이후 동  
년10월30일까지 203건으로 기중 허가제가 175건으로 서류처  
리상 완결된건은 단1건도없는 실정이니 허가교부이후에 수속  
절차가 있어야 할 착공계역시 전혀 첨부되어있지않다고하는  
것은 그만치 평소 집행상태에 불충실했음을 여실히 증명하였  
음

#### 수 도 계

당해계는 타구에 비교해서 상수도 배수사정이  
양호하다는편이며 현재까지 양수기 설치대수가 약40대로써  
수도공사가 허가되는건만도 863건으로 그공사시공이 대부분  
완성되어있으며 대형(75모관) 양수기 설치개소가 10월말일현  
재로 54개소에 목욕탕이 19개소 양조장 15개소로평상시의  
배수는 충분하게되어있었음

#### 용산구청 건설과

#### 부과, 징수계

수도사용료 세입실적에 있어서는 대체로 양호한  
편이나 과년도 미수채권 6백8십2만9천8백4십환중 10월말일

현재 4백6십3만9천6백7십1환이 징수되었으나 9월이후에 수입액을 일견하건데 월평균2, 3만환정도이며 앞으로 미수입액 2백십5만3천2백5십환을 징수하자면 십년이가까운시일을 요하게되니 차는 시세입면에있어 결손처분으로 감소될 우려가 있으며 이와같은 과년도 미수금의 징수부진은 누적되어가고 있음은 확실히 행정상 중대한 책임인만큼 각별한 조치가 기원되는바임

특히 징수원의 징수독려비로 직접적인 생활에 관계도있겠으나 금년도 사용료보다는 과년도분에 대한 청산에 가일층의 노력이 경주되어야할것임을 거듭 강조치않을수없음  
건 축 계

당해계의 허가건수는 단기4289년1월1일이후 동년 10월30일까지 425건으로 서류상의 완결은 전혀 되어있지않으며 허가사무에있어서는 타구에 비해서 일자에 단축은있었으나 허가권만 행사하고 역시 사무수급을 못하고있는형편으로 특히 차지구는 가건축물이 난립되어있을뿐외 도시계획선에 저축되는관계로 철저한 감독이 필요할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상과여히 허가증만 교부하고 절차상의 순서라든지 입주허가증등을 발급하지못하고있는 이유로미루어보아 도면상의 상위우는 허가주의 이동등으로 연유하는 실정이니 여사한 사무 처리는 최단시일내로 시정되지않어서는 안될것으로 짐작되는 동시에 1개건의 허가서류에 결재진행에있어 관할경찰서의 보안계장까지 날인했으면서도 서장의 결재가 없음으로 구청장이 결재못하게됨으로 불허가처분되는 사례는 행정면의 집행한계가 분명한 이상 허가권의 소재를 서장이 장악하고있는것과같은 인상을주게함은 대단 불상쾌한일로 여사한점은 시급히 시정하여야할것이며 또한 시정되지 않어서는 안될것으로

사료됨

#### 수 도 계

수도자재 수불대장을 현품과 조사한 결과 별무이상이며 공사건수는 212건이며 양수기 설치건수는 1,459건이  
였음

#### 토 목 계

공사진행상황은 직영공사와 지명입찰등으로 기공사액 8백4만3천2백5십6환으로 서류처리에 있어서는 약간의 불비를 발견할수있으나 대체적으로 형성만은 구비되었다고  
사료됨

#### 마포구청 건설과

##### 부과, 징수계

현년도부과금1천4백7만8천2백5십환이며 공사수입  
의 5십4만2천3백십5환 잡수입이 1백7십3만9천1백십1환 미  
징수액이 4백2십8만6천2백십환으로 상수도 배수사정과 아울  
러 징수사무에 가일층 노력이 경주되지않으면 안될것으로 사  
료됨

#### 수 도 계

당해계는 4289년6월16일부터 10월말일현재 급수  
공사 시공건수가 68건으로 대부분 완료되었으며 단기4289년  
6월14일까지 급수를 전지구에 제한했다가 동15일부로 해제  
했기때문에 타구에 비해서 부과급 시공사의 관계에 좋은 성  
적을 올리지못하고있는 형편이였음

특히 양수기 점권사무에있어 정확성을 기하지못한  
예가있었으며 사무적 처리에있어서도 불완비한점을 발견하였  
음

#### 건 설 계

당해계는 단기4289년1월1일이후 총접부건수가 279건에 허가건수는 276건으로 서류상의 완결은 단1건도 처리되어있지않았음

#### 토 목 계

단기4288년도 시공건 36건으로 차공사비 1천5백8십4만9천8백6십3환으로 현재 공사는 대부분 완공했으며 서류상에는 별로 불비를 발견할수없으나 공사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제조건등이 구비되어있지않음을 지적치않을수없음

#### 서대문구청 건설과

#### 부과, 징수계

현년도 부과는 3천1백5십2만2천2백십환으로 징수액이 2천8백5십3만1천2백8환이며 차현재 미징수금이 2백9십9만1천20환 잡수입의 2백9만8백십4환이였음

특히 과년도 미징수액이 4백8십8만5천6십9환으로 매월 징수상태가 4, 5만환 정도밖에 되지않는 현상임에 여사한 수금상태로서는 과년도분은 금년도의 미징수액과 병합해서볼때 다대한수자로 징수불능에 이르게될 우려가 농후하며 목욕탕 양조장등의 예로서는 1개 목욕탕에 5, 6십만환식이 체납되고있으면서도 단수치않고 징수하기위한 방법을 연구하고있지않음은 당해계로서는 이해하기 곤란한 실정이였음

#### 수 도 계

당해구는 시주변지구로서는 비교적 배수사정이 양호한 형편으로 양수기 설치개수가 1,190대로서 점검카-드가 6,280매 징수원 15명 급수공사건수 21건으로 징수액이 2백8만3백4환 과년도분이 1만3천7백4십1환으로 계2백9만4천4십5환이였음

특히 급수공사관계에있어 설계결재만가지고 시공

까지 건설과장 대결로 공사를 진행시키고있음은 조례에 명시한바 허가제라는 의의를 망각한 처사라고 인증함

#### 건 축 계

당해계는 단기4289년1월1일이후 허가건수 353건으로 서류상완결은 단1건도없으니 사무감사에있어 서류상의 감사가 불능인데 기이면사를 어찌 탐지할수있겠는가

#### 성동구청 건설과

#### 징수, 부과계

당해계의 부과와 징수성적은 과년도분과 아울러 평상시의 독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며 실무에 종사하는 부과처리원과 징수원들의 성실성에 기대되는바 크며 주무과 계장의 철저한 감독이 절실히 요구되는바임

#### 건 축 계

당계의 허가접부건수는 단기4289년1월1일이후로 동년 10월말일현재 234건으로 서류상 완결이34건밖에 되어 있지않는 현상이며 서류상의 불비는 없으나 서류자체의 대상이 정리되어있않는한 감사는 불능하게되는 형편이며 본건축계의 감사에있어 허가증 교부에 매건당 8천4백환식을 징수하는데 차는 순전한 지방세로 건물에 대소를 막론하고 허가건단위에 부과 징수하는까닭에 허가주로부터 대단한불평을 호소해오고있다는 사실이며 접부서류에 첨부되는 국채소화필증 2천환을 요하게됨도 역시 과중한 부담이라는 원성이 자자하고있음을 인식할수있었음

#### 제2감사반

김석근, 조영석, 최봉수, 이동률, 김재광의원으로 정하여 이하 각구청 건설과를 감사한 결과 여좌함

#### 종로구청 건설과

## 부과, 징수계

단기4288년1월부터 단기4289년10월말일현재 2억3백3십1만8천9백9십9환에 수납이 1억5천3백9만9천8십2환으로 미징수액에 5천2십1만9천9백십7환으로 타구에비해서 과대한 액면이 미징수되고있으니 차는 중앙지구에서 부과액과 반비례해서 체납금이 과대하다는 구실은 이론적으로 성립될수있을는지 모르나 실질적인 면에서는 대부분 상가를 점령하고있는중에도 부유한층의 주택지구로서 시주변구에 비해서 징수성적이 양호해야될것은 물론이면서 여사한 다액을 체납시켰다는것은 이해할수없는것으로 사료됨

## 수 도 계

단기4288년7월1일이후 단기4289년10월31일까지의 공사건 6백4십1건이 집행되고있어 기대부분이 완결되었으며 양수기 설치건수에 있어서도 타구에비해서 비교적 다량설치가되어 부과성적을 올리고있음은 다행한일이나 공사자체에있어 서류상의 부정을 합리화시켰을뿐 직원의 직접적 관련성이있는것으로미루어 이러한점등은 시정되어야할것이라고 사료됨

## 건 축 계

단기4288년8월11일부터 단기4289년10월31일한 허가건수가 410건에 불허가건수가 38건으로되어있으나 본계역시 타구 건축계와같이 사무수급에있어 사무적인 절차가 전혀 결여되어있으며 서류상의완결은 전혀 정리되어있지않으니 건축 행정에서 이러한 모순이 부분적으로라도 시정되지않는한 도시계획사무의 완벽을 기하기는 곤란한 실정이었으니 당해구의 주무책임자의 보다 열성적인 사무집행과 아울러 감독이 절실히 요망되는바임



## 토 목 계

단기4288년도 도로 하천 부지사용허가건수는 6건으로 사용료는 9십2만9천9백5십4환으로 그대부분이 완납되어있으며 서류상으로는 대체적으로 정비되어있음

### 성북구청 건설과

#### 부과, 징수계

단기4288년도부과액이 7백3십9만6천2십9환이며 징수액이 5백9십4만3천6백9십2환으로 미징수분이 1백4십5만2천3백3십7환으로 되어있으나 타구에 비해서 역시 부과액에 징수부진을 불면케하고있으니 주무계로서는 보다 가일층 미납액 감소에 주력할것을 강조치않을수없음

## 토 목 계

단기4288년도 도로 하천부지 사용허가건수는 136건이며 차사용료는 3십6만4천7백십8환중 수납금이 2십6만천2백6십1환 (81건분)이고 미수금 55건에 십만3천4백5십7환으로 되어있으며 서류상의 정비에는 별로 결함을 발견할수는 없었으나 대체적으로 진행에 완만한점을 목과할수없었음

## 건 축 계

총허가건수가 163건에 완결건수가 5건

대지증명원발급 395건

환지증명원발급 755건

중 토지현황증명원 37건

지번변경증명원 2건 을내포

사무처리에 있어서는 취급담당자의 무지와 무성의로인하여 타처에비하여 기졸렬을 발견할수있으며 근본적으로 과 계장이하 담임자의 정신이 투철치못함을 인식하였으며 사무처리에 훈련부족이 더큰 원인이되고있음

## 동대문구청 건설과

### 부과, 징수계

단기4288년7월1일이후 단기4289년10월말일현재 조정액이 2천9백3십8만7천9백7십7환이며 동기간 징수액이 2천3백2십4만4천6십2환으로되어있고 미징수액이 6백십4만3천9백십5환이니 부과액과 징수액을 비교할때 미징수액이 과다함은 평상시의 징수원의 열성이 반향되어있지않다는것을 증명하는것으로 과년도미납분과 함께 최대한의 독려가 필요할 것으로사료됨

### 건축계

본계에있어 총허가건수가 543동에 연면적 27,875,630평 완결건수 12건 이상과여히 허가사무에있어서는 약간의 불비한점을 불면하나 완결건수가 과소함은 역시 취급담당자의 무성의에 기인한다고 사료됨

### 토목계

단기4288년도 도로 하천 부지 허가건수는 8건이며 사용료는 8만4천3백십5환으로 대체적인 서류에있어 정비되어있었음

### 영등포구청

부과, 징수계에있어서는 비교적 양호한편이며 토목수도계에있어서도 서류상에는 별무이상이나 실무면에 비능률적임은 지적치않을수없음

특히 건축허가건수는 307건이나 완결건수는 단1건도 없었으니 당해계에있어서도 중대한 허가사무가 지니고있는바 자기의 의무를 망각하고 권리행사에만 급급했다는 사실을 논할때 장차 도시계획으로 백년대계를 완성해야될 처지에서 더욱 한심한 생각을금할수없음

이상으로 각구청을 감사한결과 시급히 주무당국으로서  
시정치않으면안될 맹점들을 열거하면 대략여좌함

1. 양수기설치의견

전반적으로 양수기를 설치치못하는한 기설분은 인  
정부과보다 고액이 부과되는형편임으로 구민의 불평 불만을  
면치못하니 조속설치토록하여야할것

2. 와사관50모배관의견

50모배관이상은 시에 결재를요함으로 구민의원서  
를 조속히 처리할수없는형편이며 50모 와사관까지 구청장에  
책임사항으로할것

3. 설수방지에 대한견

설수가 발생할시 배수관에한하여 본청에서 설수방  
지공사를 시행하게됨을 방지시까지 시일을요하는 형편이니  
시급 수리키워하여서는 해당 구청장에게 반기별로 영달하여  
줄것

4. 미기획지구건축허가의견

현 미기획지구내의 허가사무는 구청경유하여 본청  
에서 직접 취급하고있어서 시민에게 불편한감을 불금케하는  
동시에 허가기일의 연장됨으로 해건 역시 구청장에 위임사항  
으로 이양하여줄것

5. 공사금액폐지의견

7십만원공사 금액제임으로 실지적인 문제로 구청  
건설사무에 지장이 막심하니 공사금액한도를 폐지하여줄것

6. 점검원 수당지불에대한견

현 징수원은 징수수당이 지불되고있으나 부과  
기초자료를 조사하는 점검원에게도 수당을 지불토록할것

이 상

## 종합적인결론

이상과같이 각과 계별로 전문위원의 개별감사한 보고를 종합해보건대

첫째 사무적인 면에있어 기대반이 기계적인 사무를 집행했기때문에 하나의 체계있는 처리를 할수 없었으니

특히 건설 행정을 담당하고있는 국과로서 서류상의 불비 우는 태만 그리고 정실등으로 막대한 시간과 재정을 손실했다는것은 감사에 임한 전원이 통감하는바로서 시정을 역사있는 이후로 처음 감사하게되었든 관계로 집행당국으로서 는 방대한 서류상에있어 완전무결할수는 없다고하드래도 어느 정도의 정돈 정비는 기해야할것임에도 불구하고 건축사무에있어서는 본구청을 막론하고 허가건수에 1할도미급한 완결을 보고있으니 공문서정리에있어 특히 중대한 허가사무에있어 이렇게 한심할수가있으라

연이나 토목 수도 기타공사처리에 있어서도 이면에 거개가 정실에의하여 사실상의 부정을 합리화하였으며 각개 취급자본위로 가급적인 형식만을 구비할 작정으로 대개가 적당히 처리되고있었은즉 건설 행정을 담당한자 그누구를막론하고 말은바 자기권리보다 자기의의무를 선행시켜야 할것이였음은 재론을 불요하는바이며 직접 간접으로 다대한 이불이해를 가지고있는 전반에걸쳐 부정 불의한 처사로 인해서 시민에게는 과중한 출혈이되게하였으며 필요이상의 시간을 낭비함으로서 불평 불만을 조장하여 건설의욕을 저하시키고 시민의 사생활을 위협하는등의 결과를 초래하게되었으니 차는맛당히 당해국과장은 실질적인 책임을 부담함으로서 앞날의 수도발전과 국가백년대계에있어 후일을 경계하는 표본이되게 하여야할것이며 각공무를 집행하는자는 자기의 위치에서 분

명히 공적 책임을 완전 이행하기에 자기 본래의 노력과 창의성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것이며 온갖 독선적인 관료주의와 부패적인 요소를 발본쇄신할것에 완전 소일할 것을 맹서해야될 것으로 사료되며 제한된 시간과 국한한조건으로 복잡하고 방대한 사무면을 일일이 검토내지 검사 우는 대조하기에는 너무도 불합리한점이 많음을 늦기지않을수없으나 다음 감사시에는 이러한점등이 시정됨으로서 감사가 지니고있는바 의의가 완전 발휘될것이라고 기대되는바임

이상 건설분과위원회의 감사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하는이 있음)

○전중남 의원; 추가보고는 안하겠습니다 만은 혹 여러 의원들이 가지고 계신 이 감사보고서 내용에 혹 전문 위원이라든지 이런문자가 잘못된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고의로 넣은것은 아닙니다만은 하도 이 수자가 많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만은 인쇄부에 맡겼던것이 오늘 아침에 와서 재검토를 못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관계가 있으니 양해해주시고 전문위원이 아니라는것을 여러위원께서 잘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장 김진용; 내무분과위원회 감사보고와 건설분과위원회의 감사보고를 했습니다. 벌써 다섯시가 지났습니다. 그러면 일로 산회하고 내일 속개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이있음)

산회를 선언합니다.

(17시 10분 산회)

---

(다음 페이지에 계속)